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9호
----------	------

제출연월일 2005. 8.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을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참여의식 향상과 청소년 권익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 나.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창의력과 민주의식을 함양하여 21세기에 필요한 시민으로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 위원수 : 25인이내
 - 임 기 : 1년(1회 연임 가능)
 - 위원 자격 : 우리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또는 관내 소재 학교 학생
- 나. 위원회 기능
-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 다른 자치단체 청소년위원회와의 업무협약
 -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5. 6. 29~2005. 7. 1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정책추진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시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협의

3. 사천시(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단, 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위·해촉) ①위원은 각계각층의 청소년중에서 학교장 또는 청소년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이 임기중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의 임기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촉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